아래는 누버거버만자산운용㈜의 내부통제기준 제 56 조에 따른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을 공시하는 것입니다.

1.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된 정보
    - 투자자가 보유한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제 2 조제 4 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
    -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
    -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
    -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 32 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, 제 33 조의 2 에 따른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
    - 부동산(지상권・지역권・전세권・임차권・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) 및 특별자산(부동산 및 특별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) 운용 관련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
    -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정보
    - 피더 펀드가 보유한 자산 및 거래에 관한 정보
    - 기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은 정보

2.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의 설정 및 각 부문별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
    - 누버거버먼자산운용㈜ (이하, "회사")는 집합투자업 (추후, 투자일임업 또는 투자자문업을 추가로 등록할 수 있음)을 영위하고 있으며, 해외 계열회사에 대한 지원 업무를 부수업무로 영위하고 있습니다.
    - 회사는 집합투자업 또는 부수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부서간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어, 회사내에 부서간 별도의 정보교류차단을 위한 대상 부문 또는 대상 정보를 지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.

3. 거래주의목록(Watch List) 및 거래제한 목록(Restricted List) 지정 기준

    - 회사는 일반적으로 상장 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미공개주요정보를 취득하지 않을 것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, 미공개주요정보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 거래제한목록(Restricted List)에 포함하여 누버거버먼그룹의 정보차단정책 (Neuberger Berman Information Barrier Policy)에 따라 컴플라이언스팀에서 관리합니다.

    - 거래주의목록(Watch List)에는 다양한 이유에서 포함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비공개주요정보에 대한 요청이 거절된 경우 또는 거래제한목록에 포함될 필요가 없거나, 법규상의 고려에 의해 포함될 수 있습니다.

4.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및 대응방안

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조건에 대한 세부지침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거나

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이해상충 및 법령위반 가능성을 해소하고 거래합니다.

- 회사의 이해관계인과의 거래
- Front running
-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
-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간의 거래
- 집합투자재산간의 거래
- 집합투자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지나치게 자주 매매하는 행위
-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

5. 기타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 –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제 3 절 정보차단벽 참조